

전통임상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산업화 방안에 대한 고찰

- WIPO의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 -

안상우 · 김홍준 · 최환수*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Abstract

Considerations about protection of traditional clinical technologies and industrialization plans

Ahn Sangwoo, Kim Hongjun, Choi Hwans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committee is progressing their agreement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gene resource(GR), folklore(FL) in WIPO. It is in the course of selection with precedence of TK, GR, FL in WIPO, focused on discussions about listing of TK documents, standardization of DB construction, sharing and profit distribution of GR.

We made some plans to deal with agreements in WIPO. These plans consist of 5 subjects which are investigatio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laws and systems, study of examination and finding, construction of DB information, development of value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system with TK, GR. We suggest preceding details about 5 subjects respectively. It is the character of this plan that patent information DB system of TK, GR is the axis.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se plans to succeed that we have to have connections with expert groups in other parts and government officials, taking whole supports of government because our traditional medical related study basis is weak.

Keyword : WIPO,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ialization system

1. 서론

인도의 넘나무 사건을¹⁾ 계기로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각국의 전통지식(이하 'TK'라 함) 및 유전자원(이하 'GR'이라 함) 보호 문제는 결국 WIPO의 TK 등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이라 함) 분야의 평가를 위한 세계지적재산이슈반(Global Issue Division)에서 지금까지 논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TK 등의 지재권적 보호 문제에 대한 세계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 않은 TK, GR 및 FL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보건 의료체제내 전통의료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WIPO 논의에 참여만하기 보다는 우리의 TK, GR 및 FL를 보호해서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WIPO의 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한 기존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TK, GR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지만 많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TK와 GR의 산업화 육성 정책을 통한 보호보다는 단지 우리의 현행 지재권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순한 법률적 모색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과 문화의 진흥이라고 하는 정책 목적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지재권이므로 우리의 TK, GR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적 방안을 포함해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WIPO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전통의학지식(임상기술), GR의 권리보호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선행과제들을 살펴보았다.

2. 본론

2.1. 방안 정립의 조건

2.1.1. 방안 정립의 근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정부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WIPO의 TK, GR의 지재권적 권리 보호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세계적인 논의가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세계 무역 협상체계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후진국에게 통상 무역상에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무형자산인 지식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크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선진국들이 타 국가의 TK, GR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지재권적 보호를 통해 타 국가의 전통적 생산방법들에 제제를 함으로 중후진국의 반발과 인식전환을 가져왔다²⁾. 그래서 TK, GR를 보유한 중후진국들이 이의 소유권 보호 문제를 제기하면서 WIPO 논의가 시작되었다.

1)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21 통권 제71호(2002. 3), 2002: 6~15.

인도 전통 민속의학 Ayurveda 에서는 예전부터 Neem 나무를 주요한 약재로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Neem 나무에서 추출한 여러 물질에 대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 제약 회사들이 각종 국제특허를 취득해서 인도 토착민들이 전통적 방법으로 넘나무에서 제품 생산하던 것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도 방갈로에서 대규모 항의시위('93.10)가 있었다.

두 번째, 의료계의 경향 변화와 의료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중반에 오면서 서양의학의 질병 치료 위주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사용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미국의 대체의학 이용자 수가 1990년도에 33.8%에서 1997년에 42.1%로 증가되었고, 또한 미국인들이 본인부담으로 대체의학에 지출하는 돈이 일반 의료에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다²⁾는 예에서 의료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은 18세기 이후 과학기술에 근거한 생산품을 원료로 다시 새로운 발견·발명하는 순환시스템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급진적인 세계 과학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 발전 순환시스템이 아닌 인류가 축적하고 있던 전통적인 원천지식·기술과 자원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고등식물로부터 분리되어 현대 의학에 의해 널리 쓰이고 있는 120종의 화합물 가운데 75%는 전통적인 지식체계내에서 이미 그 효용이 알려진 것들이며 12종 미만의 것들만 간단한 화학적 조작에 의해 합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식물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정제한 것일 뿐이다⁴⁾라는 것이다.

네 번째, TK와 GR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축적한 문화적 유산으로 이에 내포된 다양한 창조성으로 인류에게 앞으로도 많은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TK, GR은 인류 공동의 유용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산업화 논리, 경제의 헤게모니상에 있는 지적재산권으로만 보호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산업화, 경제적 논리상에 부합되는 TK,

GR만 남고 나머지는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2.1.2. 방안 정립의 기본 자세

앞에서 말한 TK, GR의 지재권적 보호에 관한 WIPO 중심의 세계적인 논의가 있게 된 원인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산업화와 관련된 경제 분야, 세 번째는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학문 분야, 네 번째는 문화 분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더욱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의 이해득실을 판단해 대응하기 때문에 현재 WIPO의 논의 경향은 개도국과 선진국들간의 갈등 양상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WIPO 논의에 나타나는 경향은 모든 국가가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 양상뿐만 아니라 개도국간, 선진국간에도 자국의 입장으로 논의되는 관련 사항에 대한 대처가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어떻게 WIPO 논의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단지 우리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선진국도 아니고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도 아니라고 해서 WIPO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 또한 단순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통의약분야의 경우 중국과 유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생명공학 발전의 잠재성을 고려해서 TK, GR의 이용에서 발생한 결과와 이익분배를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보다 기존 지재권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선진국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⁶⁾ 오히려

2) 예를 들어 인도의 반다나 시바가 중후진국이 보유한 TK, GR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는 기본적 인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3) 안두현, 한의약 연구사업의 투자전략 연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2: 59, 63.
 4) 반다나 시바 지음,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1판1쇄,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142.
 5) 개도국들은 주로 GR·TK·FL의 보호 당위성을 강조하고 WIPO가 개도국에 대해 능력배양 지원을 포함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통지식에 관한 기술이 타인에게 특허되지 않도록 TK를 선행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D/B 구축에 동의하고 특허법조약·IPC(국제특허분류) 등 기존의 지재권 제도와와의 조화로운 틀 속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보호가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6) 신정은, 앞의 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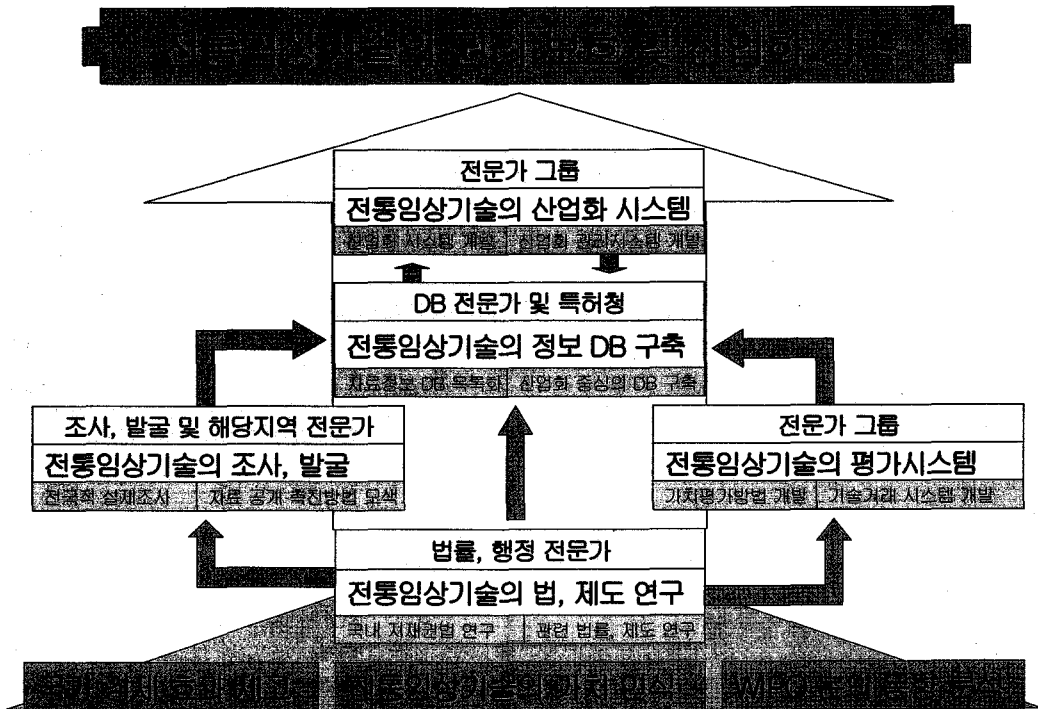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5천년 역사동안에 축적된 많은 TK, GR을 이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이로 국가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전 인류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근대 보건의료체계내에 전통의학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MK에 대한 지적권을 인정할 경우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하에서 WIPO 논의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또한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적권은 산업과 문화의 진흥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우리 정부가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2.2. 전통의학지식의 권리 보호 및 산업화 방안

WIPO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단지 우리의 현행 지적권 법률범위내에 국한해서 다루었거나) 또는 우리의 TK, GR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좀더 긍정적인 인식과 자세로서 WIPO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7) 이상정 · 조상혁 ·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 · 제도적 보장 방안 연구. 창작과 권리 2002년 여름호. 서울: 세창출판사, 2002: 93~94.

본 방안의 특징은 TK, GR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화 가이드 시스템을 포함시켜 우리 TK, GR의 산업화를 활성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이의 핵심은 DB에 있다는 것이다. 본 방안에서는 수행할 과제를 크게 5분야로 구분해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 정부 부처 담당자 그룹이 참여하고 한의학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모든 분야를 동시에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1) 전통임상기술의 법, 제도 연구
- 2) 전통임상기술의 조사, 발굴 연구
- 3) 전통임상기술의 정보 DB화
- 4) 전통임상기술의 가치평가방법 개발
- 5) 전통임상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시스템 개발

2.2.1. 선행 과제

2.2.1.1. 전통임상기술의 법, 제도 연구

지재권은 산업과 문화의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에 의해 인정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행의 보호 형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⁸⁾. 그러므로 현재 WIPO의 TK, GR의 지재권적 보호 논의에서도 TK, GR의 특성에 맞는 sui generis system을 요구하거나 단지 기존 지재권법 범위에서 수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므로 WIPO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기존 지

재권법 체계와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지재권법 연구

기존 지재권 측면으로 TK를 보호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TK에 대한 신규성 인정의 기준, TK에 대한 소유자의 개념 정립과 보호기간과 보호형태의 결정 등과 같이 기존 지재권의 보호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지금도 기존 지재권에 부합되는 경우 즉 비공개라든가 신규성이 인정된다든가 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¹⁰⁾. 그러나 기존 지재권은 TK 특히 전통 임상기술의 독특한 특성¹¹⁾에 맞는 실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외 WIPO의 논의는 TK 보유국이 다른 국가에서 자국의 TK를 활용해 현행 지재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자국의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제하는 것에 반발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WIPO의 논의는 단순히 TK의 지재권적 보호를 위한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전쟁터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면 WIPO 논의에서 제기된 TK의 보호를 위한 sui generis system에 대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몇몇 나라가 가진 특별한 TK 보호 법률을 고찰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WIPO 논의¹²⁾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8) 李漢相, 金俊學 共著. 知識財産權法. 초판2쇄, 서울: 도서출판 第一法規. 2001: 51.

9)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위의 글, 85.

발명자의 확정, 신규성 문제와 진보성 판단 심사관의 부재, 전통의약 특허의 한계 및 의약특허의 효력 제한,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의 어려움 등을 전통의약 특허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전통의약분야 출원 동향을 보면 1986부터 1999년까지 광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는 210건, 동물은 285건, 식물은 867건 등이 있다.

11)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위의 글, 75.

전통의약은 ① 독특한 이론체계 ② 천연물질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산물 ③ 혼합물 ④ 효과는 명백하나 메커니즘은 불분명 ⑤ 오랜 기간 동안 약효가 검증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함.

해서는 우리 전통 문화를 보호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기존 지재권법으로 TK를 온전하게 보호할 가능성을 모색해 기존 지재권법을 일부 수정한 '지재권법의 수정법률'을 마련하고 또한 이외에 WIPO 논의에서 제기되는 sui generis system으로 우리의 TK, GR 보유 정도와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해서 '전통지식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 초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2) 제도적 연구

지재권은 산업과 문화의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에 의해 인정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행의 보호 형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WIPO의 TK, GR의 지재권적 보호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TK, GR은 우리의 오랜 역사적 과정속에서 축적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 관련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등과 같은 법률로서¹³⁾ TK, GR을 우리 문화 유산으로 인식해 보호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R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 관련 법률 등과 관련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TK, GR중 TMK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한의약 육성법' 및 의료법이 관련되어 있고 또한 '대한 약전'은 GR중 약재에 관한 국가 표준으로서 그 나라의 유용자원을 약용이라는 측면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한의약 육성법'은 현재 상징적인 의미만이 있을 뿐이며, 현재의 현황과 주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 약전'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¹⁴⁾.

WIPO 논의는 TK, GR의 산업적 유용성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법령이 2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¹⁵⁾ TK, GR과 관련된 것은 없다. TK, 특히 TM 관련해 미진한 정부 R&D 투자비를 보장하고 TK, GR의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외에 우리의 TM과 유사한 중국의 현황 파악 또한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중의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약 보호 및 기술이전규칙(1987), 중의약변형물보호규칙(1993) 등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중국의 중의약에 대한

12) WIPO의 정부간위원회의 논의 뿐만 아니라 CDB, FAO(UN 식량 및 농업기구)의 식물유전자위원회, WTO의 TRIPS 이사회,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UNESCO 등에서의 논의들도 포함된다.

13)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9조에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통해 전통문화의 유지·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문화 관련 법률로 헌법에 따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들에 특히 전통의약기술 혹은 한의학(혹 '전통의학'이라는 명칭도 없음)이 전통문화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4) 이재현, 유전자원의 지재권 연구에 있어서의 선행 문제에 대한 고찰, 안상우, 전통의약기술의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 한국한의약연구원 보고서, 2002: 228.

① 약전의 내용에서 일부 자국의 역사적 혹은 토착화된 부분을 반영하고 그 반영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②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기원식물 혹은 기원식물의 기본종을 활용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일본과 유사하거나 중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농후하다. ③ 이에 비하여 북한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자국의 자생유전자원을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④ 따라서 자생자원의 배타적 권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약용자원의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약전의 기원식물 및 기원식물의 기준종의 자생 유전자원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15) 이정희·유각근·이상수 공저. 과학기술혁신과 법·현행 과학기술법령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조판, 서울: 세창출판사, 2001: 1.

행정적 보호 및 진흥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들의 TM 보호 및 진흥을 장려하는 제도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TM, GR의 보호 문제에 관해 우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2.1.2. 전통임상기술의 조사, 발굴 연구

TK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전통의약기술과 같은 경우의 특수한 의료 기술들은 가계(家系)로 계승하기만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보유자가 공개했을 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구상아래 3대 특별법(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지원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각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TK, GR을 이용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TK의 조사, 발굴 시에 권리화방안 뿐만 아니라 산업화 방안도 모색한다면 이러한 발굴 연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까지 국내의 TM 현황 조사 발굴에 관하여 특허청의 주지·저명기술집·전통식품('93.12), 농업진흥청의 전통지식 모음집('98.4.16), 보건복지부의 '한약처방의 우수경험방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1999년)¹⁶⁾, '우수경험방 활용방안 연구(2003)' 등이 있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바로 보유자의 권리보호 및 산업화 유도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가 사료된다.

이외에 공개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헌발굴연구로 전문지 지상(예를 들면 민족의학신문의 고의서 산책)에 발표되는 비공개된 문헌들은 공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공개되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GR은 국내 자생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대한약전을 중국의 것과 차별화되는 주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자생종에 대한 조사 발굴 연구도 절실하다. 그렇기 위해서 국내 통용되는 약재와 해외에서 수입약재 조사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2.2.1.3. 전통임상기술의 정보 DB화

본 방안의 핵심은 전통임상기술의 정보 DB에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전통 임상기술 정보의 DB를 중심으로 다른 분야간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연구결과는 DB로 집중되어야 하므로 본 방안의 핵심이 된다.

WIPO 논의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TK, GR의 목록화 및 DB 구축에 관한 과제이다. 즉 문헌화 지원을 위한 Toolkit 개발을 2003년 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DB 구축에 대해서는 '내용 및 출처확인 표준', '기술적 표준' 및 '보안관련 표준' 등의 기술적인 제안에까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WIPO 논의 동향의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외 TK, GR의 특성과 현 지적권법 혹은 예측되는 sui generis system상에서 중요한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16) 주영승, 전통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상 발굴 및 법적·제도적보장방안연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고서, 2001.

이밖에 산업화 촉진을 유도해서 이용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DB를 중심으로한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유자와 평가자 및 개발자간의 신속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비공개 자료의 정보 공개 유도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자금,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조사, 발굴 연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존 특허 정보자료의 동향에 대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현 특허청의 PIAS)과 patent pool 시스템¹⁷⁾ 등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2.1.4. 전통임상기술의 가치평가방법 개발

기술 가치평가란 무형의 기술에 양적인 공정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과학기술과 기업금융사이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TK, GR의 가치평가 시스템 개발은 이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실용화, 상품화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로서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TK, GR의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문가 그룹에 의한 Delpei 방법¹⁸⁾을 활용하여 기초작업을 하면서 TK, GR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방법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된 TK, GR의 가치 분석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2.2.1.5. 전통임상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시스템 개발

TK, GR의 권리보호에 대한 WIPO 논의에 대처 방안으로 산업화 시스템 개발 연구까지 언급하는 것은 논리가 비약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재권 본래 의미에 산업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단순히 지재권법적인 측면만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대처방안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한방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영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TK 특허 TM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고, 또한 시장 자체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TM 근거의 의료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또한 빠르게 건강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한방 관련 산업의 현황 조사를 통해 관련 산업체와 시장 규모 및 예측되는 경제성 등을 분석해 정부 지원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방 관련 산업체의 자금, 기술, 유통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 및 정부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TK, GR을 이용한 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방안에 대한 각 분야별 선행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17)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업무대행기관이 특허권자들을 대신하여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

18) 이한기, 전통지식의 개발가치 평가 연구. 농촌생활과학21(2), 2000: (82).

3차의 Delpei 방법을 통해 여러 분야의 TK 항목에 대해 과학성, 경제성, 상품화 가능성 및 종합평가로 구분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야	수행 과제
법, 제도 연구	1) 지적권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지적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적권법의 요건과 TK 특성 비교분석 - 기존 TK 관련 판례 연구 ② 특별한 시스템(sui generis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 국가중 현존하는 별도 sui generis 체제의 보호 법률 - 필리핀의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지적권보호법' 2) 제도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전자원 및 한약 제제에 관한 현행 법률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 약전 및 식·의약품 관련 법률 ② 중국 중의약 관련 법률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보호 및 기술이전규칙(1987), 중의약변형물보호규칙(1993) - 이외의 관련 법률 ③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기술 관련 법, 문화 관련 법, - 한의학 육성법
조사, 발굴 연구	1) 전통임상기술의 조사 발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헌 조사, 발굴 ② 탐방, 및 현장방문 조사, 발굴 2) 우리나라 자생 동식물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통 한약재 조사 연구 ② 각 지역 자생종 조사 연구
정보 DB 화	1) WIPO에서 정립할 표준에 적합하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WIPO 논의 동향 분석 ② TK, GR의 특성에 맞는 DB 구성 2) DB의 산업화 촉진 유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공개 자료의 공개 유도를 위한 시스템 개발 ② 기존 특허 자료 동향 분석 시스템(예 : PIAS) ③ Patent pool 개발
가치평가 시스템 연구	1) 가치평가 Protocol 개발 2) 기존 TK, GR의 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TK, GR의 가치평가 ② 실시간 TK, GR의 가치평가 제공 서비스 시스템 개발
산업화(상용화) 시스템 개발	1) 관련 산업 현황 조사 및 지원 시스템 2) 산학연 및 정부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R&D 기반 구축 및 산업화와의 연계 시스템 ② 관련 분야 전문가 유도 방안

<표 1>

3. 고찰 및 결론

21세기는 전세계가 지식기반 사회로 경제환경에 변화함에 따라 정보나 인간의 지적능력이 새로운 재산가치로 부상하고 기업활동 및 기업합병에 있어서 이들 무형자산(지재권)이 중요한 자산으로 되고 있다¹⁹⁾. 이로 인해 지재권 문제가 주요한 통상이슈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²⁰⁾.

특히 과학기술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이 TMK를 활용한 신약개발로 부가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게 되면서 TM을 포함한 TK를 다량으로 보유한 국가들은 과학기술 수준의 저하로 인한 박탈감과 자국의 TK를 보호해야 한다는 급박함으로 TK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주장하였고 결국 WIPO를 중심으로 TK 등의 지재권 논의가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6차례의 정부간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WIPO 논의가 6차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특허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WIPO 논의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우리가 보유한 TK, GR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정부 노력이 미진하게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한의학 연구원을 중심으로 단지 TK, GR의 지재권적 보호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산업화 측면까지 고려한 방안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본 방안은 TK, GR의 지재권 관련 법률, 제도 연구, 조사, 발굴 연구, 정보 DB 화, 가치평가 시스템 개발, 산업화 시스템 개발 등 다섯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선행 과제를 선정하였다. 본 방안의 특징은 다른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정보 DB에 집중시켜

정보 DB를 통해 TK, GR의 권리 보호와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분야의 연구항목을 모두 함께 수행하면서 한의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및 정부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만 본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대처 노력은 WIPO 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TK, GR을 이용해 산업화에 성공한 성공사례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의학 관련 산업체는 영세하고 학교와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은 R&D 기반 또한 취약해 산업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우선은 관련되는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WIPO의 TK, GR에 관한 지재권 보호 논의의 의미와 파급효과 그리고 미래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 정부의 인식 부족을 해소시키고 정부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WIPO의 TK, GR에 관한 지재권적 보호 논의는 TK, GR 특히 TM의 임상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TM의 전통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며 인류의 건강 유지와 질병예방이라는 의학의 목표를 충실하고, 폭넓게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하고 시급한 기회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유한 TK, GR의 권리보호와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WIPO의 TK, GR의 지재권적 보호 논의에 대처하려는 노력과 TK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19)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발명저널, 통권2호(2002. 4), 2002: 17~30.

20) 김수동, 최근 세계의 지재권 뉴이슈와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 産業財産權 통권 제11호(2002. 5), 2002: 287~342.

참고 문헌

1.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21』, 통권 제71호(2002. 3), 2002.
2. 안두현. 『한의약 연구사업의 투자전략 연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2.
3. 반다나 시바 지음,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1판1쇄,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4. 이상정 · 조상혁 ·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 · 제도적 보장 방안 연구』, 창작과 권리 2002년 여름호. 서울: 세창출판사, 2002.
5. 李漢相, 金俊學 共著. 『知識財産權法』, 초판2쇄, 서울: 도서출판 第一法規. 2001.
6. 안상우. 『전통의약기술의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서, 2002.
7. 이경희 · 유각근 · 이상수 공저. 『과학기술혁신과 법·현행 과학기술법령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초판, 서울: 세창출판사, 2001.
8. 주영승. 『전통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상 발굴 및 법적 · 제도적보장방안연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고서, 2001.
9. 이한기. 『전통지식의 개발가치 평가 연구』, 농촌생활과학 21(2), 2000.
10.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발명저널. 통권2호(2002. 4). 2002.
11. 김수동. 『최근 세계의 지적권 뉴이슈와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 産業財産權 통권 제11호(2002. 5), 2002.

